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 방 별 정 직 공 무 원 인 사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퇴직희망자에 대한 징계사유 등 퇴직 제한사유 확인을 의무화하고, 징계 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 시에도 면직심사 절차를 적용하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퇴직희망자의 퇴직 제한사유 확인 의무화(안 제13조)

퇴직희망자에 대하여 징계사유 등 퇴직 제한사유 확인을 의무화하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 개정조항 준용

나. 징계 외의 사유로 인한 직권면직 시에도 면직심사 절차 적용(안 제13조, 제14조)

현행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 이외 등으로 인한 면직시에도 직권 면직 심사 절차 적용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 제목 “(시간제 근무)”를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간제근무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징계 등)”을 “(면직 및 징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과처분”을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그 밖의 사유로”로, “한다”를 “하고, 해당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공무원에게 그 사유 및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전단 중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징계처분등과 퇴직 제한”으로,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를 “제69조의4, 제70조부터 제73조의2까지”로, “제외한다) 및 제73조의2”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징계처

분등”으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u>시간제근무공무원</u> 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 ----- -- <u>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u>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u>시간제 근무공무원</u> 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	② ----- <u>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u> ----- ----- ----- -----.
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u>시간제근무공무원</u> 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u>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u> 을 임용할 수 있다.	③ ----- <u>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u> -----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시간제근무공무원</u> 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④ ----- <u>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u> ----- -----.
제13조(징계 등) ① 지방별정직공	제13조(면직 및 징계 등) ① ----

무원에게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법 제69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제70조 중 강등에 관한 사항과 제71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9조의3 및 제73조의2제3항의 “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위원회”로, “결정”은 “재결”

----- 부과처분
(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그 밖의 사유로 -----
----- 하고, 해당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
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 개
최 10일 전까지 해당 공무원에
게 그 사유 및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징계처
분등과 퇴직 제한-----
----- 제69조의4, 제70조부
터 제73조의2까지-----
----- 제외한다)

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른 <u>징계처분</u> 또는 <u>징계부가금 부과처분</u>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제13조제1항</u>에 따라 직권으로 면직하려는 경우	-----. ④ ----- <u>징계처분등</u>----- ----- ----- ----- -----. 제14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13조제2항</u>-----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6